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394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김연정,김제현,임승현,추은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현

피고A

변론 종결2020. 12. 18.

판결 선고2021. 1. 22.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4. 2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5. 7. 2. 접수 제90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5. 5.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5. 7. 2. 접수 제90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소외 금융기관들이 B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양수받아 2018. 9. 12. 위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 125661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같은 달 1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금액 22,891,505원 및 그 중 6,405,287원에 대하여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125,200원(위 청구금액 등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원리금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8. 11. 13. 확정되었다. 이 사건 원리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각 채권의 발생일은 2000년 내지 2002년 무렵이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1	D	신용카드	2000/09/17	2,390,399	6,782,814	9,173,213
2	D카드	카드를	2001/03/25	249,205	639,496	888,701
3	D카드	카드론	2002/03/14	1,265,683	3,323,839	4,589,522
4	E	일반학부공	2002/06/25	2,500,000	5,740,069	8,240,069
합계	6,405,287	16,486,218	22,891,505			

나. 소외 회사는 2018. 12. 27. 이 사건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B에게 위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한편 2019. 12. 2.을 기준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24,239,508원이다(원금 6,405,287원, 가지금금 260,336원, 이자 17,573,885원).

다. B는 모친 F가 2015. 4. 25. 사망한 후 자신에게 상속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3/90 지분에 관하여 위 사망일인 2015. 4.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친형인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5. 7. 2. 접수 제9029호로, 같은 해 5. 29.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5. 7. 2. 접수 제903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F가 사망한 2015. 4. 25.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5. 무렵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B의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의사 F가 2015. 4. 25. 사망한 후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남해군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역시 B와 사이에 위 각 처분행위에 관한 상속협의 내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물적 담보금액이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5. 9. 16. 접수 제13939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근저당권자 : G조합)하여 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은 2009. 9. 21. 무렵 시가 합계 97,847,600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2) 한편, 피고는 위 F의 사망 전 2007. 11. 20. H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는 위 F의 사망과 관련된 B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인바, 이와 무관한 위 H의 사망과 관련된 피고의 위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선주

별지

1) 피고는 위 근저당채무 외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압류 등기 상 금액 10,000,000원 등의 추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채무를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각 부동산의 시가액이 채무 합계액을 상회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